

경제관계장관회의

24-19-5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2024. 10. 2.

관계부처 합동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요약)

□ **(추진배경)**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보다 밀도있는 지원 필요

* 기준금리(%) : (22.1Q)1.3 (2Q)1.8 (3Q)2.5 (4Q)3.3 (23.1Q)3.5 (24.2Q)3.5

○ 그간, 전문가TF*, 현장간담회(8.7일, 금융위원장) 등을 통해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

* 「서민·자영업자TF」 : '24.5월부터 6차례 회의, 연구기관, 법조계,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방향)** 지난 7.3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이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사업자,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①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유동성 애로를 해소

②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자 능력을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

③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민·자영업자의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서민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는 **대상별·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추진

①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 **(서민)** 정책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환유예 대상 확대, 장기 분할상환 전환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

✓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1년)**, **장기분할상환(10년)** 지원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사업자**로 확대하고, (* 現 : 미취업자, 중소기업 재직 1년 이내)

✓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2%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 ① 상환유예 대상 확대 : 일시적 상환애로를 겪는 정책금융 이용자 대상 **최대 1년 상환유예**
- ② 햇살론뱅크 장기 분할상환 전환 : 실직, 폐업 등 상환애로자 대상 **최장 10년 분할상환**
- ③ 햇살론 유스 지원대상자 확대 :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④ **취약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이자 경감 : 현행 3.6%에서 **2%대**로 이용

- **(자영업자)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하고,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기간 최대 5년 추가** 부여

② **차주 맞춤형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차주, 채무조정 범위, 협약기관 확대** 등을 통한 지원(※ 9.12일 시행) 및 **소상공인용 주택연금상품 검토**

* 소상공인용 주택연금상품 검토 : 우대조건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등 상환** 가능

- **(서민) 취약층, 청년층, 未취업·再취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 특히, **소액채무를 연체한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채무를 면제**

- ① **취약층**
 -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단기연체 시에도 **원금감면(최대 15%)**
 - [과감한 지원] **채무 5백만원 이하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년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 감면**
- ② **청년** : 채무조정 변제금을 일시완제한 청년은 **원금 감면폭을 20%**로 확대 (現 10~15%)
- ③ **未취업·再 취업자** : 취업지원제도 이수후 **취업시 채무감면을 확대**
(예. 이자율 채무조정시 초저금리 적용 등)

- **(인프라) 개인채무자보호법(10월 시행)을 통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

③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서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부처 간(예: 중기부) 원스톱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 점검

- **(자영업자) 재창업시 자금지원 우대, 창업 前·後 단계 컨설팅 제공,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를 배달플랫폼 등과 연계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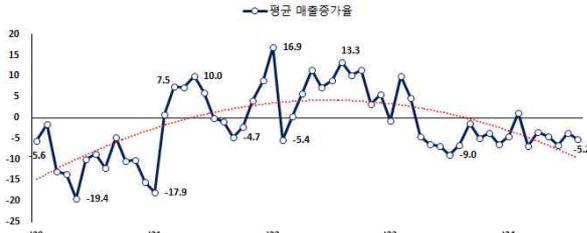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서민 등 취약계층 금융 및 경영여건 분석 ..	2
III.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6
IV.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대책	7
1. 금융지원 강화	8
2. 채무조정 강화	11
3.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16
V. 향후 추진일정	18

I . 추진배경

- (정책환경)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오며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여건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중

<개인사업자 카드매출 증가율 (IBK)>



<가구 실질소득 증가율>



- (그간 대응노력)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분야는 [1]자금지원과 [2]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 자영업자 지원 추진

[서민]	자금지원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코로나 前 연평균 6.8조원→ 코로나 이후 9.5조원), 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등
	채무조정	신복위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등
[자영업자]	자금지원	유동성 지원, 이자 경감(1.8조원+@) 등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용사면(약 20.3만 혜택) 등

- (한계) 그럼에도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고, 매출부진과 비용부담 확대 등으로 경영여건 개선도 지연

* '23년 폐업률 9.5%(전년대비 +0.8%p), 폐업자 수 91.1만명(전년대비 +11.1만명)

- 아울러,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금융의 역할이 필요

➔ 기존 지원체계(자금지원·채무조정)를 통해 보다 적극 대응하면서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체계 마련

II.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및 경영여건 분석

1. 서민

□ **금융접근성** 민간 서민금융업권(저축·대부) 중심 신규 대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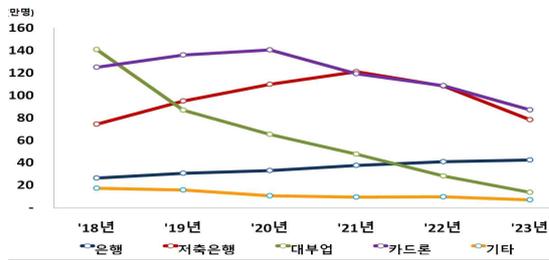
○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신용 하위 20% 대출 : ('22년) 27.8조원 → ('23년) 19.7조원, △8.1조원
('23.1~5월) 8.5조원 → ('24.1~5월) 8.4조원, △0.1조원

- 고금리('22.下~), 연체율 상승*에 따른 금융권 수익·건전성 저하 우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데 기인

* 연체율 추이(%) : [저축은행] ('21년말)2.5 ('22년말)3.4 ('23년말)6.6
[대부업] ('21년말)6.1 ('22년말)7.3 ('23년말)12.6

<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인원 추이 >



< 업권별 저신용층 대출공급 추이 >

(조원)	'22년	'23년	'22→'23	'24.5	'23.5→'24.5
은행	3.5	3.4	△0.1	1.1	△0.4
상호	0.2	0.2	△0.0	0.1	△0.0
저축	15.0	9.7	△5.3	4.5	0.3
대부	2.3	0.8	△1.5	0.5	0.2
카드론 등	6.7	5.4	△1.2	2.2	△0.2
합계	27.8	19.7	△8.1	8.4	△0.1

□ **채무상환능력** 상환능력 저하로 연체 및 채무조정 수요 증가

○ (취약층) 다중채무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장기연체자는 '23년부터 증가 전환되는 등 잠재 취약층 증가

○ (채무조정) 상환부담이 과도해진 서민들의 채무조정 신청이 '23년 들어 큰 폭 증가, 역대 세 번째(1위 '04년, 2위 '05년) 기록

○ (불법사금융)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된 취약층 피해 증가

< 연체자, 다중채무자수 추이 >

(만명)	'21년	'22년	'23년	243월
단기연체자	12.3	15.0	16.7	19.1
장기연체자(90일~)*	72.6	69.7	75.2	77.3
다중채무자수	443.2	451.3	455.8	455.0**

* 역대 1위 : '03년 372만명(이후 지속 하락)

** '24.6월말 기준 실적

< 채무조정, 불사금 피해신청 >

(만건)	'21년	'22년	'23년	'246월
신복위 채무조정*	12.7	13.8	18.5	9.6
법원 화생파산신청	13.0	13.1	16.2	8.6
불사금 피해신고	0.9	1.0	1.3	0.7

* 역대 1, 2위 : '04년 28.7만명, '05년 19.4만명

□ **정책금융**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흡수 필요성 증대**

○ 정책서민 이용자 설문결과, 상환능력 저하(→**민간대출 거절**) 등으로 **정책상품을 이용**하게 된 비율이 크게 증가 ('22년 27%→'23년 43%)

* 기존 정책상품 선택이유 1위인 '대출조건 유리' 선택 비율(37%→27%)은 2위로 하락

-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자금 마련이 불가**(29%)*

* 저축은행(25%), 대부업(18%)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

○ '23년 들어 정책서민상품 **상담이 급증**(56.5%)하였으나, 상담 건수 대비 정책서민상품 **대출 건수***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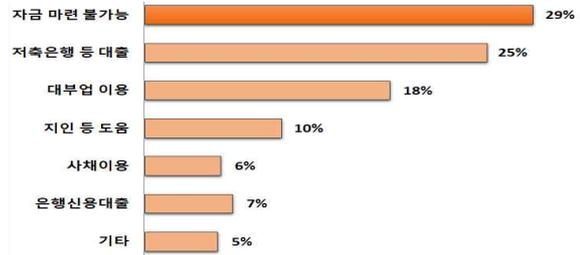
* 지급율(대출건수/상담건수, 백만) 추이

('21년) 50%(0.6/1.2) ('22년) 56%(0.7/1.3) ('23년) 46%(1.0/2.3) ('24.2Q) 38%(0.5/1.3)

< 정책서민금융선택이유 >



< 정책서민금융 외 대체자금 마련 수단 >



□ **지원수요** 취약층의 자금 및 채무조정 등 지원 수요 확대 전망

○ 부동산 여건 악화 등에 따라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신용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한은, 음수는 대출관리 강화)

: ('22.1Q)△22 ('22.4Q)△57 ('23.4Q)△32 ('24.1Q)△21 ('24.2Q)△14 ('24.3Q^e)△11

○ 반면, 대출수요 설문, 채무조정 예약건수 등 선행지표 감안시 취약층의 **자금·지원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저축은행 대출수요(한은, 양수는 수요 확대) : ('23.4Q)△4 ('24.1Q)+9 ('24.2Q)+4 ('24.3Q^e)+3

* 신복위 콜센터 상담건수(월평균, 만건)

: ('22)27.1 ('23.1Q)33.5 ('23.2Q)33.7 ('23.3Q)31.6 ('23.4Q)32.8 ('24.1Q)34.0 ('24.2Q)33.2

신복위 예약대기일수(월평균, 일)

: ('22) 2.9 ('23.1Q) 6.7 ('23.2Q) 6.7 ('23.3Q) 5.5 ('23.4Q) 6.2 ('24.1Q) 5.6 ('24.2Q) 7.1

2. 자영업자

□ 일반 과포화 상황임에도, 진입(퇴출)이 지속되는 多生多死 생태계

○ (규모) 자영업자는 취업자의 23.2%('23)*에 달하는 과포화 상태

* 무급가족종사자(89.9만명, '23)를 제외한 협의의 자영업자도 취업자의 20.0% 수준

- 이는 OECD 평균(16.9%, '22년)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의 취업자 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상위권*(38개 회원국 중 8위)

*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7개국(브라질, 멕시코, 그리스 등)은 한국보다 경제규모·수준이 낮은 국가

○ (창·폐업) 과포화 상황임에도 창업 및 이에 따른 폐업 빈번

- 자영업자(5인 미만)는 최근 5년간 480만개 창업, 358만개 폐업* 했으며, 10개 중 7개는 5년 내 폐업(5년 생존율 32.9%**)

* 최근 5개년('17~'21)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 / ** 1인 자영업자 기준

□ 소득 저소득층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생다사의 악순환에 노출

○ 1분위(저소득)에서 자영업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임금근로자의 2배↑)

〈 소득분위별 가구주 직업 및 가구 평균소득(통계청, '23) 〉

가구주 직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	69.6%	34.8%	33.5%	28.0%	25.6%
근로자 가구	30.4%	65.2%	66.5%	72.0%	74.4%
월평균 소득	118만원	279만원	422만원	612만원	1,080만원

- 대다수 소상공인의 창업 동기가 “생계를 위한 선택*”이라는 통계도 저소득층 중심 생계형 자영업 현실 방증**

* 소상공인실태 시험조사('18,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응답 불가)

1위(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68%), 2위(성공할 수 있는 기회, 25%), 3위(가업승계, 2%)

○ 생계문제는 준비 없는 성급한 창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폐업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

* 자영업자의 약 67%가 6개월 미만의 짧은 준비 후 창업하고 있으며(통계청, '23), 창업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폐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한국노동연구원, 2022)

□ **연령·업종** 50대 이상(stock), 30대 이하(flow)가 저숙련 업종에 집중

- **(연령)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자영업자의 50% 이상(stock)
 - * 대표자 연령별 소상공인 분포(통계청, '22) : (30대이하) 21.7% (40대) 27.9%, (50대 이상) 50.4%
- 전체 **신규유입(flow)** 자영업자의 약 절반이 **30대 이하 청년층**
 - * '21년 기준,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50.3%가 30세 이하, 55세 이상은 15.7% 차지 (자료: 미취업자 또는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로, KDI(2022)의 추정치)
- **(업종) 자영업자의 약 절반(50.4%, '22)이 저숙련 업종***에 종사
 -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2개 업종을 저숙련 업종으로 규정
- 특히, **30대 이하(사회 초년생)**의 저숙련 업종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22년 기준 [20대 이하] 61.8%, [30대] 56.6%)

□ **영업** 저숙련 업종의 **영업이익 개선이 더디고 영세화도 심화**
영업 외 거시여건 변화로 **금융비용 등 영업외 비용부담 가중**

- **(영업이익)**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으로 임금 근로자와의 격차가 **확대**(['19] 87.6% → ['22] 73.3%*)되면서, 절대·상대적 **영세성 심화**
 - *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소득(각 임금과 영업이익으로 간주) 비교(고용부, 통계청)
 - ** 코로나前 회복 수준('19년 대비 '22년 소득비교) : 임금근로자 112.3%, 자영업자 93.9%
- 특히 **저숙련 업종**(도소매, 숙박·음식)이 코로나 前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고^[1], 업종 내에서는 **영세업체**(3,500만원) 비중 증대^[2]
 - * [1] '19년 대비 '22년 자영업자 업종별 영업이익 : 저숙련업종 86.5%, 기타 103.3%
 - [2] 영세업체 비중(%): [저숙련] 54.3('18) → 67.0('21) / [기타] 58.2('18) → 62.1('21)
- **(영업외)** 취약차주^[1] 및 1인당 대출액^[2] 등은 증가 추세로, 영세 자영업자의 **“체감” 금융비용 부담**은 클 것으로 추정
 -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현황(통계청, 나이스)
 - [1] 취약차주* 수(만명) : ('19) 42.9 ('20) 46.0 ('21) 50.0 ('22) 60.1 ('23) 61.8
 - [2] 취약차주 1인당 대출액(억원) : ('19) 2.4 ('20) 2.5 ('21) 2.6 ('22) 2.6 ('23) 2.7
 - *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소득 하위 30% 이하)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나이스 기준)인 차주

Ⅲ.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現 상황 평가

-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
 -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이 지속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
 - 자영업자의 경우 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비 없는 창업으로 창·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
- ➔ 서민·자영업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

향후 정책 방향

- 금융부문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는 원칙하에 **대상별·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추진
 - **금융애로** ➔ 정책자금(서금원·신보·기은) 지원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
 - **과도한 채무부담** ➔ 과중 채무자를 선별하여, 개인(채무조정)·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택연금) 맞춤형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한편, 채무조정 인프라 강화(개인채무자보호법)
 - **경쟁력 저하** ➔ 경제적 자활을 위한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자금·경영역량(컨설팅)·경영여건(플랫폼 연계) 등을 종합 지원

IV.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대책

< 지원 방향 >

- ◆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환부담 완화**
 - **한계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상환능력,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생여건** 마련

지원 부문	세부 내용
금융지원 강화	서민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상환부담 완화 ①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② 햇살론뱅크 분할상환 ③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 ④ 햇살론유스 이자 경감 ⑤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 ⑥ 정책서민금융 공급 지속
	자영업자 소상공인 유동성 애로 해소 및 자금지원 ① 소상공인 대상 우대조건 정책금융 확대 ②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채무조정 강화	선별 과중채무자 를 선제적 으로 선별하여 대상별 맞춤 지원 서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① 취약층 :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 ② 청년층 :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융·복합 지원 ③ 未취업·再취업자 : 근로의욕 고취, 취업노력 유도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택연금 을 통한 지원 강화 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② 새출발기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③ 주택연금을 활용한 자영업자 지원
	인프라 원활한 재기지원 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서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합지원[금융·고용·복지 등] ① 위기가구 발굴시 정책서민금융 정보 활용 ②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③ 고용지원제도 연계 지속 및 신용·부채 컨설팅 확대 ④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연계
	자영업자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① 폐업 후 재창업시 자금지원 우대 ② 창업 전후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③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 대상 배달플랫폼 연계



서민·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재기 지원

1

금융지원 강화

서민 정책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

1.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

- (현행) 코로나19 이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 폐업 등 사유(제한적)로 상환유예 신청시 6+6개월의 상환유예 지원 중
- (개선) 상환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으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24말까지 신청)
 - * (대상) 실직, 폐업 ⇒ 영세(연매출 3억원↓)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 (지원) 상환유예 6개월 지원 후 추가 신청시 6개월 지원

2. 햇살론뱅크 장기 분할상환(최장 10년) 전환

- (현행)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 지연으로 햇살론뱅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급격히 증가*
 - * 햇살론뱅크 월평균 대위변제발생액(억원) : ('23년) 156 → ('24.1~7월) 304
- (개선)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장기(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여 상환 부담 완화
 - * (대상) 햇살론뱅크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소득·신용 무관, 현재 未연체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 상환 애로자

3.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자 확대 : 청년 개인사업자

- (현행) 저소득 청년(대학(원)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대상으로 12백만원 한도 내에서 용도별 한도**를 구분하여 지원
 - *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
 - ** 일반생활자금 : 3백만원/반기, 특정용도자금(학업·취업준비·의료·주거) : 9백만원/1회
- (개선)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 신설*
 - * 지원대상자가 물품구매, 임차료 등 용도 증빙시 1회 9백만원 한도로 지원

4. 저소득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이자 경감 : “청년자립자금” 신설

- (현행)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인하($\Delta 0.9\%p$)하여 3.6%(은행금리3.5% + 보증료율0.1%)로 지원 중

* [사회적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개선)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

5. 소액생계비대출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 (현행) 소액생계비대출은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며, ①성실상환시 금리가 인하*되고 ②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이자 성실납부시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금융교육 이수시 0.5%p 추가 인하

- (개선) ①최초금리로 이용하며 상환시 금리인하분을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 ②전액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로 재대출

* 최대 15.9% ~ 최저 9.4% 로 이용 가능

6.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이후 연 10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 중

* [정책서민금융 연평균 공급액(조원)] 코로나前('16~'19) 6.8 → 코로나 이후('20~'23) 9.5

⇒ 향후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재원확보 노력 지속

※ 금융권 출연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24.9.30일)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1,039억원 추가 확보

자영업자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

1. 소상공인 대상 우대조건 정책금융 확대

- **(현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22.7월)」을 통해 당초 목표(2년간 41.2조원*)를 초과하여 공급 중(47.3조원/‘24.6월말, 신보·기은)
 - * (유동성 공급) 10.5조원, (경쟁력 강화) 29.7조원, (재기지원) 1.0조원
- **(개선)**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대조건외 유동성 지원을 확대(‘24년말까지 11.1조원 추가 지원 목표)
 - ① **(유동성 공급)**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2.4조원)
 - ② **(경쟁력 강화)** 사업 확장,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자금(☞ 8.4조원)
 - ③ **(재기지원)** 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로 업종전환을 위한 자금(☞ 0.3조원)

2.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 **(현행)** ‘소상공인 위탁보증*(‘20.5월~‘22.1월)’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년간** 대출보증 지원(신보)
 - * (지원내용) 업체당 보증금액 최대 3,800만원, 보증비율 95%
(지원실적) 총 7.4조원 보증 공급
 - ** (상환구조) ①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또는 ②3년 거치 + 2년 분할상환
- **(개선)** 차주 신청시,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 하여 月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24.12월~)
 - * (예) 기존 : 총 5년 ☞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변경 : 총 10년 ☞ 거치 3년, 분할상환 7년(月 납부액 약 70% 감소 효과)

2

채무조정 강화

선별 과중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대상별 맞춤 지원

- **(현행)** 서민·자영업자는 채무 및 경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를 탐색하여 이용
 - 특히, 채무자의 경우 위기가 심화(추심독촉 등)되어야 도움을 요청
- **(개선)** 다양한 위기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안내(“지역별 금융주치의”, 서금원)
 - **(서민·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채무상황 변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금융교육,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 제공*
 - * CB사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점 하락, he기관 대출 연체 등 징후를 사전에 파악 → 관련 지원제도를 연계·안내
 - **(자영업자)** 금융권이 보유한 경영·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하고 위기상황별 지원방안 안내
 - * 카드사, 채권 금융회사가 자영업자 매출액, 대출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대상자 선별 → 지원제도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안내 → 위기 유형별 지원

< 지역별 금융주치의 프로세스 >

대상	선별	진단	처방
개인	CB사 신용정보 등 활용	신용평점 하락 연체 발생·우려 불안정 소득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 안내 채무조정제도, 불법사금융 예방 안내 취업지원제도, 복지제도 등 안내
자영업자	금융권 보유 경영·금융 정보를 활용	유동성위기 운영능력 부족 재전환 필요	정책자금 안내 경영 컨설팅*, 디지털 촉진 등 안내 새출발기금 안내 및 재창업·취업 지원

* 증기부 플랫폼(소상공인 24), 카드사 컨설팅, 정책기관 컨설팅 등 안내

서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취약층·청년층 등) 채무조정 지원

1. 취약층 :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

① 선제적 지원 단기연체자(연체 30일 이하) 대상 원금감면

- (현행)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일 경우 원금 최대 30% 감면('23.4월~)
 - * 취약층인 아닌 일반 채무조정지원자는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원금 감면 가능
- ⇒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은 연체 심화 전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보다 선제적으로 경감할 필요
- (개선) 취약층은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원금감면 지원
 - 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 중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조정지원자
 - 내용 금리인하(50~70%) → 원금감면(최대 15%) 지원

② 과감한 지원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英 부채구제명령)

* 영국 부채구제명령(DRO: Debt Relief Order) : 소득(월가용소득 £75이하), 재산 (£2,000이하)이 현저히 낮은 소액채무자(채무액 £30,000이하) 대상 1년간 상환유예 후 소득, 재산 변동 없을 경우 법원 재판없이 면책(법원이 아닌 행정기구(파산청) 운영)

- (현행)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을 지원 중*
 - * 소액채무(원금 15백만원↓)는 조정 후 원금을 3년 이상 50%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 감면 중
- ⇒ 취약채무자의 상환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의무가 일부 남아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장기적인 고통 야기
- (개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취약층에 대한 채무면제
 - 대상 ①채무 5백만원 이하, ②연체 1년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내용 채무상환 유예(1년) 후 채무부담*(=총채무액/소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 감면
- * 신청 당시 채무자의 '소득 대비 총채무액'과 비교하여 개선 여부를 판단

2. 청년 :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융·복합 지원

□ **채무조정**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 (현행) 채무조정 이행중 일시완제시 원금 10~15% 감면
- (개선) 일시 완제시 감면폭을 20%로 확대하여 지원 강화

□ **취업지원**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직업훈련비 등(최대 50만원) 지원

* 취업촉진 프로그램 이수 청년 직업훈련비(30만원), 면접비(1회 7만원, 총3회) 지원(최대 50만원)

□ **교육·멘토링** 지방자치단체 청년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문가를 통한 진로 탐색, 소통능력 개선 등 지원

* (예)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의 우선선발 요건에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 청년' 추가 등

3. 未취업·再취업자 : 근로의욕 고취, 취업노력 유도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52.6%는 소득이 불안정한 무직·일용직이나, 취업 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부재

□ (개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성공시 채무 감면율을 확대하여 채무자 자활의지 고취

- (사전채무조정^{연체31~89일}) 이자율 채무조정시 최저금리(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상}) 채무조정 이행 중 일시완제할 경우 적용하는 추가 원금감면을 확대(최대 15%→20%)

연체기간	기존	취업성공시
연체 31~89일	이자율 30~70% 감면	최저이자율(3.25%) 적용
연체 90일~	일시완제시 원금 10~15% 감면	일시완제시 원금 20% 감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30→40조원으로 확대), 주택연금을 통한 지원 강화

1. 새출발기금 :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확대

※ 9.12일 시행

- 대상차주 확대** '24.6월까지 영업한 경우로 대상 확대 (현행 比 7개월 연장)
- 신청기간 연장** '26년 말까지 신청기간 연장 (현행 比 15개월 연장)
- 부실·폐업자 지원강화**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감면을 최대 10%p 우대(최대 90%)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 프로그램(중기부)

2. 새출발기금 :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9.12일 시행

- 신규대출** 6개월 이내 신규대출도 일정 요건하에 채무조정 허용
 - (공통) 대환대출 등 도덕적해이와 무관한 대출의 경우, 종전 채무 상환목적이 입증되면 신규대출 산정에서 제외
 - (부실우려차주) 신규대출 비중이 30%미만인 경우 채무조정 지원
- 정책자금** 지신보 보증대출(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에 대한 채무조정 범위 확대
- 협약기관 확대** 미가입 금융회사 가입 독려('24.1~8월까지 330여개 추가가입)

3. 주택연금을 활용한 자영업자 지원

- (현행) 자영업자가 폐업을 희망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 폐업 및 직업 전환에 애로
- (개선) 폐업 예정 자영업자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우대조건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 검토

※ 55세 이상 유주택 가구 29%(216만)가 자영업 영위, 자영업자 59.5%(335만)가 사업자대출 보유

<폐업 희망 자영업자용 주택연금 상품(案)>

✓ 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등 상환* 可, 금리 0.1% 우대

* 일반 주택연금은 ¹대출한도의 90% 내에서 ²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만 일시인출 可

1.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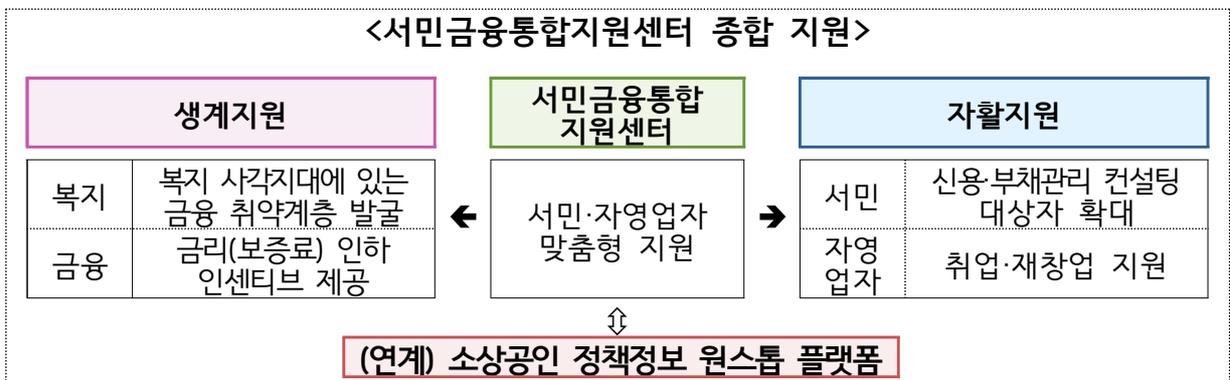
- **(현행)** 국내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부실 발생 후 신복위,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에 의존(사후적 구제)
 - 연체 이후 이자부담이 지속 증가하며 장기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되는 상황
- ⇒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 **(개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쏠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 마련
 -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신속·유연하게 채무자 재기를 지원
 - **연체부담 경감** 일부 대출 금액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수단 추심연락 제한 및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추심 유예* 가능
 - * 유예기간 :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1회 연장 가능)
 - 유예사유 : 재난, 채무자·배우자의 수술·입원, 혼인·장례 등
 - **채권매각 규율 강화**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양도를 제한하고, 채권 양도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
- ⇒ ①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마련, ②종합질의집 배포, ③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착하도록 지원

3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서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합지원(금융·고용·복지 등)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지원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
 - **생계지원** 서민·자영업자 등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복지)·금융 안전망 제공
 - **복지** 정책서민금융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 * ①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 ②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 **금융**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취약계층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시 금리 인하**(△0.5%p)
 - *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 수혜 가능 여부를 맞춤형으로 진단·추천
 - **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 (최초)15.9 → (6개월 상환)12.9 → (1년 상환)9.9 + 금융교육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0.5%p↓(최저 9.4%)
 - **자활지원** 이용자의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서민** 무소득·비정규소득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지속 연계, 고용지원제도 연계자에게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등
 - ** 전문가가 신용부채 상태를 점검, 금융비용 경감 솔루션을 제공(현재는 정책상품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
 - **자영업자**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과 연계하여 취업·재창업 지원*
 - * 중기부·고용부 등의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프로그램 등과 연계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1. 재창업 : 폐업 후 재창업시 자금지원(신·기보, 중진공) 강화

- **(현행)** 사업성평가 → 재창업지원위원회를 거쳐 재창업자에 대해 신복위 채무조정 및 자금 지원(30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 다만, 재창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중진공, 신보, 기보)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자금지원 실적은 미미*
 - * 재창업자금 지원실적(건) : ('18)170 ('19)54 ('20)15 ('21)10 ('22)8 ('23)1 ('24.8월)2
- **(개선)** 재창업지원위원회 등에서 사업성을 인정한 자영업자에 대해 금리·보증료율 인하, 거치기간 연장 등 자금지원 우대*
 - * 지원내용 : [신·기보] 보증료율 인하(0.2%p↓) 지원
[중진공] 중진공(성실경영 심층평가) 연계 강화를 통해 거치기간 연장(1년↑), 대출금리 인하(0.3%p↓) 지원

2.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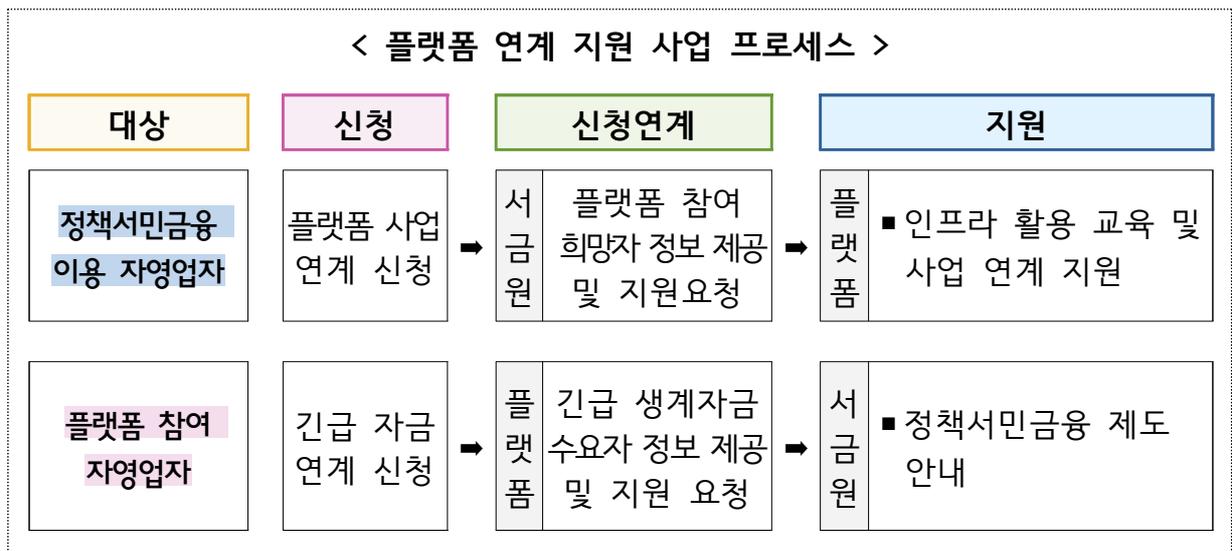
- 창업 前·後 단계에서 자영업자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소상공인24 등에 지원정보를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과 연계 추진

<주요 기관의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개선방안>

기관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성공드림 컨설팅"	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내용	· 성공드림 컨설팅과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컨설팅 솔루션(BASA)을 연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지원효과 극대화
기업은행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퇴직자 또는 업종전환이나 다점포 운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내용	·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한 필수 이론교육(입지 분석, 세무·노무상식), 소진공 등과 연계한 현장 컨설팅(1:1 금융지원 상담)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긴급 컨설팅"	대상	· 미소금융, 보증부대출(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이용자
	내용	· 세무·노무 관련 이슈에 적시 대응하도록 비대면 긴급 컨설팅 신설, 소진공 등 컨설팅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 체계 강화

3. 플랫폼

- 서금원과 플랫폼 사업자(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뽕겨요”)가 협업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를 상호 지원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 플랫폼 참여 희망자의 영업활동을 지원
 - **판로개척** 플랫폼 업체에서 플랫폼 인프라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을 연계하여 판로개척을 지원
 -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 자금 애로자를 정책서민금융으로 연계
 - **서민금융 연계**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 긴급 생계자금 수요자에게 정책서민금융 정보를 제공
- ⇒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여타 주요 플랫폼과 협업 확대 검토 추진



V. 향후 추진일정

-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금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

참 고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과제		일정	담당부처
1. 금융지원 강화			
① 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상환부담 완화			
1.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		'24.10월	금융위
2. 햇살론뱅크 장기 분할상환 전환		'24.10월	금융위
3.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확대		'24.4Q	금융위
4. 저소득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이자 경감		'25.2Q	금융위
5. 소액생계비대출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재대출	'24.9월	금융위
	페이백	'25.1분기	
6.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연중	금융위
② 자영업자 자금 지원 확대			
1. 소상공인 대상 우대조건 유동성 지원		~'24년말	금융위
2.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24.12월~	금융위
2. 채무조정 강화			
① 과중 채무자 선별 시스템 도입 : 지역별 금융주치의 제도		'25.1Q	금융위
②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1. 취약층 :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		'24.4Q	금융위
2. 청년 :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융·복합 지원		'24.4Q	금융위
3. 未취업·再취업자 : 근로의욕 고취, 취업노력 유도		'24.4Q	금융위
③ 새출발기금, 주택연금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강화			
1. 새출발기금 :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확대		'24.9월	금융위
2. 새출발기금 :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24.9월	금융위
3. 주택연금을 활용한 자영업자 지원		'25.1Q	금융위
④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1.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24.4Q	금융위
3.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합지원(금융·고용·복지 등)			
1.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정책서민금융 정보 제공		'25.上	금융위·복지부
2.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금리 인하		'24.12월	금융위·복지부
3.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 및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24.10월	금융위·고용부
4. 소상공인 플랫폼 연계를 통한 자영업자 취업·재창업 지원		'25.上	금융위·중기부
②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1. 재창업 지원		'24.4Q	금융위
2. 창업 전후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서금융	'24.9월~	금융위
	신보·기은	연중	
3.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 대상 배달플랫폼 연계 지원		'24.12월	금융위